

의안번호	제 836 호
의 결 연 월 일	202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1월 10일

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36
----------	-----

발의연월일 : 2025년 1월 10일

발 의 자 : 박재주, 최정훈, 안지윤,
김국기, 안치영, 오영탁,
조성태,

1. 개정이유

- ‘문화재’를 ‘국가유산’ 체제로 개편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음.
- 이에, 국가유산 체제에 발맞춰 관련 조례인 「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령에 따른 제명 변경
 - － 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법령에 따른 조문 변경
 - － “문화재교육” → “국가유산교육”(안 제1조~제5조,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나. 관련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

라. 조례안예고 : 예고대상(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교육”을 “국가유산교육 진흥”으로,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한다.

제2조 중 ““문화재교육”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국가유산교육”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25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문화재교육”을 “국가유산교육”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교육의”를 “국가유산교육의”로, “문화재교육 진흥계획”을 “국가유산교육 진흥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교육”을 각각 “국가유산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세우고”를 “수립하고”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문화재교육”을 각각 “국가유산교육”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협력체계 구축)”을 “(협력체계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교육”을 “국가유산교육”으로, “마련”을 “구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u>	<u>충청북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문화재교육</u> 을 통해 충청북도민의 <u>문화재</u> 에 관한 이해증진과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국가유산교육</u> <u>진흥</u> ----- <u>문화유산</u> 에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재교육”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교육을 말한다.	제2조(정의) ----- “국가유산교육”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25조-----.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u>문화재교육</u>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 - <u>국가유산교육</u> -----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진흥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u>문화재교육</u> 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u>문화재교육 진흥계획</u> 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 수립 등) ① ----- -- <u>국가유산교육</u> 의 ----- ----- ----- <u>국가유산교육 진흥계획</u> ----- -----.
1. <u>문화재교육</u> 진흥정책의 목표와 기본 추진 방향 2. <u>문화재교육</u>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3. <u>문화재교육</u> 전문인력 양성 및	1. <u>국가유산교육</u> ----- ----- 2. <u>국가유산교육</u> ----- ----- 3. <u>국가유산교육</u> -----

지원	-----
4. <u>문화재교육</u> 프로그램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4. <u>국가유산교육</u> ----- -----
5. <u>문화재교육</u>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u>국가유산교육</u> ----- -----
6.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에 대한 <u>문화재</u> <u>교육</u> 의 지원	6. ----- ----- ----- <u>국가</u> <u>유산교육</u> -----
7. 그 밖에 <u>문화재교육</u> 진흥에 필요한 사항	7. --- <u>국가유산교육</u> ----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u>문화재교</u> <u>육</u>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 계획을 <u>세우고</u> 시행하여야 한 다.	② ----- <u>국가유산</u> <u>교육</u> ----- ----- <u>수립하고</u> ----- -.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u>문화</u> <u>재교육</u>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 <u>국가</u> <u>유산교육</u> ----- ----- -----.
1. 지역별·유형별 <u>문화재교육</u> 프로그램 현황	1. ----- <u>국가유산교육</u> -----
2. <u>문화재교육</u> 전문인력 현황	2. <u>국가유산교육</u> -----
3. <u>문화재교육</u> 현장의 수요	3. <u>국가유산교육</u> -----
4. 그 밖에 도지사가 <u>문화재교육</u> 관련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u>국가유산교육</u> ----- -----
제7조(<u>협력체계 구축</u>) 도지사는 <u>문화재교육</u>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교육청, 시군 및 관련 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를 <u>마련</u> 할 수 있다.	제7조(<u>협력체계구축</u>) ----- <u>국가유산교육</u> ----- ----- ----- <u>구축</u> -----.

관련법령 발췌

□ 국가유산기본법

- 제25조(국가유산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유산의 가치를 이해·습득하고 국가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국가유산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 및 인증제도 등을 실시·운영할 수 있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하며, 문화유산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의2(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1.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2.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3. 문화유산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문화유산교육의 지원
5.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2조의3(문화유산교육의 실태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5(문화유산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문화유산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문화유산교육의 범위 및 유형)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제외한다. <개정 2024. 5. 7.>

1. 문화유산을 통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교육
2.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유산의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교육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문화유산교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문화유산교육
2. 사회문화유산교육: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및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법인·단체에서 실시하는 학교문화유산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유산교육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제1호

○ 사 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별도의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